

제315회 임시회
2012. 10. 18(목)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0. 18(목)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2년 9월 27일

다. 회부일자 : 2012년 10월 4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10월 15일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균형건설국장 신 병 대)

가. 제안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12. 3. 17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 안전 심의 등을 위한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문 홍 열)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도에 위임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 입법예고(2012. 8. 17 ~ 9. 6)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조문상 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
- 조문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수기로 제작된 종이지적이 측량기술의 발달에 따른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하므로, 위원회 설치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적분야 관련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 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시·군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 순위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각각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위원이 제8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안전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사업기간 : 2012 ~ 2030 (예상)
- 사업대상 : 충청북도 전체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2조에 따라 회의 참석한 위원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개최
- 개최시기 : 분기별 1회 / 년 4회 예상
- 위원회구성 : 10명 이내로 구성 예정 (공무원 2명, 위촉위원8명)

나. 추계 결과

- 년 4회 × 8명 × 70천원 = 2,240천원
- 매년 2,240천원의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이 필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 자체재원 사용

5. 연도별 비용추계서

천원)

(단위 :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2030년까지)
세 출	1,120	2,240	2,240	2,240	2,240	41,440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1,120	2,240	2,240	2,240	2,240	41,440

6. 작성자 : 균형건설국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관계 법령 발취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062호 시행 2012. 3. 17]

제29조(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적재조사 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시·군·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도의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도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66호 시행 2012.03.17.]

제1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 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중앙위원회의 간사)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제20조(중앙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중앙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중앙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의견청취) 중앙위원회는 안전심의회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운영세칙)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